「학칙 및 학칙시행세칙」 개정(안)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

「학칙 및 학칙시행세칙」 개정을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7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. 06. 07(목) 12:00까지 자유 양식에 따라 기재한 의견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처 : 교무처 교무팀

– 이메일(haksa@konyang.ac.kr) / 전화번호 : 041-730-5121

붙임 :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(안) 1부. 끝.

2018년 05월 29일

교 무 처 장

「학 칙」 개정(안)

❑ **개정 사유**

❍ 창의융합대학이 현재 프라임창의융합대학으로 직제가 통합되었으며, 프라임창의융합대학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학칙 및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운영하므로 관련 조항 삭제 필요

❍ 2016학년도부터 130학점 축소에 따른 정규교과에서 특별학점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필요

❑ **신구대조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창의융합대학 등) 창의융합대학의 특성화된 교육방식 적용에 필요한 학사, 학생, 교원, 장학, 입학, 산학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.	제4조(창의융합대학 등) **<삭 제>**
제38조 ⑤ 국내외의 고등학교 학생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 또는 국내의 다른 대학교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본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에 이수학점을 본 대학교의 **특별학점으로**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	제38조 ⑤ 국내외의 고등학교 학생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 또는 국내의 다른 대학교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본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에 이수학점을 본 대학교의 **학점으로**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<신 설>	부 칙 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「학 칙 시 행 세 칙」 개정(안)

❑ 개정 사유

❍ 학기당 책임시수 산정 및 성적 평가 시 모듈식 교육을 적용하는 학부(과) 소속의 교수에 대해 예외 없이 다른 교수들과 동일하게 운영되므로 관련 내용 삭제 필요

❍ 모집 중단학과의 경우에는 재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3명 이하로 수강하는 경우도 있어 성적 평가 시 A학점 비율(최대 30%)에 대해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

❑ 신구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강의책임시수) ① 전임교수의 강의책임시수는 학기당 150시간(연간 300시간)으로 한다. ② 실험, 실습, 실기 등을 실시하는 과목에 있어서는 1시간을 0.5시간으로 한다. ③ 보직교수 및 특성화분야 담당교수,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과목 책임교수, **모듈식 교육을 적용하는 학부(과) 소속 교수의** 학기당 강의책임시수는 따로 정한다.	제22조(강의책임시수) ① <생 략 : 현행과 같음> ② <생 략 : 현행과 같음> ③ 보직교수 및 특성화분야 담당교수, **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과목 책임교수 등의 학기당 강의책임시수는** 따로 정한다.
제31조(성적평가 및 분류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각 호별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 1. 실험실습 및 실기 전용 교과, 학업성취도별 편성교과, 수강인원 15명 이하인 교과, **모듈식 교육을 적용하는 학부(과)의 개설교과,** 외국인 유학생 및 장애학생에 대한 A학점은 최대 30%를 초과할 수 없음	제31조(성적평가 및 분류) ③ <생 략 : 현행과 같음> 1. 실험실습 및 실기 전용 교과, 학업성취도별 편성교과, **수강인원 15명 이하인 교과, 외국인 유학생** 및 장애학생에 대한 A학점은 최대 30%를 초과할 수 없음**(단, 모집중단학과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)**
<신 설>	부 칙 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